
[2010. 3.19] [22075 , 2010. 3.15,]
() 02 - 2023 - 7552

1 () 「 」
. < 2006.1.13 >

[1 1 2 <1994.7.7 >]

1 2(1) 1

1. 1 4 . .
(" ")

2. 1 4 가
[2000.8.28]

2 () 「 」 (" ") 5 2 1
" " 「 」 2

. (" . ")
[2006.1.13]

2 2() 7 4 1 21 2 1
가 . < 2003.3.25, 2003.12.18, 2006.1.13 >

1.
가. 2 . 가
가
가
가 . (" . ") 가 가

2. 가
가. 1 2 4
가
1 2 4
가 가
[2000.8.28]

2 3() 7 4 1

1. .
2. .
- 3.

21 2 2

. < [2003.3.25](#) >

- 1.
2. , , . .
- 3.
- 4.
- 5.

[[2000.8.28](#)]

2 4() 7 4 21 2 . , . .

. < [2003.12.18](#) >

30 , . 20 . 가 1

. < [2003.12.18, 2006.1.13](#) >

1. . 4 5
2. 「 」
3. 가
4. 가
5. 가
6. 가
7. 가
8. 「 」 2 1

. < [2008.2.29, 2010.3.15](#) >

[[2003.3.25](#)]

2 5() . < [2003.3.25](#) >

1. 가. . 가

.
. .
. .
. . 가
2. .
가. . 가
. .
. .
. .
. . .

.< 2003.12.18 >
[2000.8.28]
3 <2000.8.28 >
3 2() 10 2 1 ("
") .< 2008.2.29, 2010.3.15 >
1.
2.
3.
4.

[2003.3.25]
3 3() 1 1 15
. .
가 .< 2003.12.18, 2006.1.13, 2006.6.12, 2008.2.29, 2010.3.15 >
1.
2.
3.
가. 2 3 ()
)

가 가
「 」 2 1
가
가
가
가
가

[[2003.3.25](#)]

3 4() , . <
[2003.3.25](#)>

< [2003.3.25](#) >

2

[[1994.12.30](#)]

3 5 <[2003.3.25](#)>

3 6 <[2003.3.25](#)>

3 7()

, . < [2000.8.28](#), [2003.3.25](#), [2003.12.18](#), [2008.2.29](#),
[2010.3.15](#)>

[[1994.12.30](#)]

3 8() 1 , . <
[2003.12.18](#)>

[[2003.3.25](#)]

3 9()

[[2003.3.25](#)]

3 10()

. < [2003.3.25](#) >

[[1994.12.30](#)]

3 11() 10 2 2
(" ") 1 3 , 4 . <

[2008.2.29, 2010.3.15](#)>

- 1.
- 2.
- 3.
4. 54 3 1 3

[[2003.3.25](#)]

3 12() 1 1 15

가 .< [2003.12.18, 2006.1.13, 2006.6.12, 2008.2.29, 2010.3.15](#)>

- 1.
- 2.
- 3.
- 가. 2 3 (

)

. 가 가

. 「 」 2 1

.

.

. 가

.

[[2003.3.25](#)]

3 13() 3 4, 3 7 3 10 . "

" " " .

[[2003.3.25](#)]

3 14() 10 2 2 ("

") 10 .

1 .

< [2006.1.13](#)>

1. 가

2. 「 」 2 1

1. 54 3 1 3
2. 19 4 2 가 가 가
3. 가
3

[[2004.2.25](#)]

4 () . () 11 2
12 2
「 」 3 , , (가)

1 가

.< [2008.2.29, 2010.3.15](#)>

[[2006.12.29](#)]

4 2() 15 1

. < [1984.6.30, 1994.7.7, 1994.12.23, 2003.12.18, 2004.2.25, 2006.12.29, 2008.2.29, 2010.3.15](#)>

[[1977.3.24](#)]

4 3()

. < [2008.2.29, 2010.3.15](#)>

1

< [2008.2.29, 2010.3.15](#)>

[[2000.8.28](#)]

5 () 29 5

1

[2006.1.13]

6 <2000.8.28>

7 <1994.7.7>

8 <1994.7.7>

9 <1994.7.7>

10 <1994.7.7>

11 () 40 1 .

. < 1994.12.30, 2004.2.25 >

[1994.7.7]

11 2() 40 2

. < 1994.7.7, 1994.12.30, 1999.7.23, 2001.7.7, 2003.11.29, 2005.6.30, 2006.1.13 >

1. 「 」 (300)

2. 「 」 (20) 「 」

3. (300), (1 100)
() . (50)

4. . . . , 「 」 , 「 」
(300 .), 「 」 「 」
」

5. . .

6. 「 」 (300)

6 2. 「 . 」 2 「 」 2

7. 「 . 」 (1)

8. 「 」 . . .

9. 2

10. 「 . 」 . 「 」 (50
.)

[1984.6.30]

11 3 <1999.7.23>

11 4 <1997.12.31>

12 () 44 . 4 9

가 , . < 2003.12.18>

1. 4 5 :

2. 6 9 :

[2000.8.28]

13 () .

(.) . . < 1984.6.30, 1994.7.7,

2000.8.28>

. 1 .<

2000.8.28, 2006.1.13>

1. .

2. 「 」

14 () 3 2 2 1

7 (8) .<

2000.8.28, 2003.12.18>

15 (「 가 」) . . .

가 「 가 」 , 「 」

. < 2000.8.28, 2006.1.13>

16 () . 45

. . . .<

1984.6.30, 1994.7.7>

1 .< 1977.3.24,

1984.6.30, 1994.7.7>

17 (.) 49 . . 가 3

2 . < 1977.3.24, 2000.8.28>

18 () . 가 48 49

. < 1984.6.30, 1994.7.7, 1994.12.23,

2008.2.29, 2010.3.15>

1.

2.

3.

19 () 가 54

가 . < 1984.6.30, 1994.7.7, 1994.12.23, 2008.2.29,

2010.3.15>

1

30

.< 1977.3.24>

19 2() 가 54 2

. < 1999.7.23, 2000.8.28, 2001.9.29,

2003.3.25, 2006.1.13>

1. 「 」 가

「 」

2. 1 1 5

3. 「 」

가.	1	100	100
.	2	100	85
.	3	100	70
.	4	100	55
.	5	100	40
.	6	100	25

4. 「 」 240

5. 30

[1994.12.30]

19 3() 54 2 1

1. (" ")

2.

1 2 " " (), , , , ,

2

가 , 2

[1994.12.30]

19 4() 54 2 1

. < 2008.2.29, 2010.3.15 >

. . 1 .

2008.2.29, 2010.3.15 >

. < 2000.8.28,

. < 2008.2.29, 2010.3.15 >

19 3

. < 2008.2.29, 2010.3.15 >

. < 2000.8.28, 2008.2.29, 2010.3.15 >

[1994.12.30]

19 5 <1999.7.23 >

20 <2000.8.28 >

21 (.) 56 2 2

. . 1

()

. < 1999.7.23, 2004.3.17 >

2 . < 1999.7.23, 2006.1.13 >

. < 2000.8.28, 2008.2.29, 2010.3.15 >

[1984.6.30]

22 () . < 1994.12.23,

2008.2.29, 2010.3.15 >

< 22075 ,2010. 3.15 >

1 () 2010 3 19 . < >

2 () <144 >

<145>

2 4 4 , 3 2 4 , 3 3 3 3 , 3 7, 3 11 3 , 3
 12 3 3 , 4 2 , 4 3 1 2 , 18 , 19 4
 2 3 5 1 1 가 (1) (6) " 가 "
 " "
 4 2, 19 1 , 19 4 1 , 21 4 22 " 가 " "
 "

<146> <187>

[별표 2] <신설 2006.1.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제3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56조의2 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6조의2 제1항제2호	100만원
3.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6조의2 제1항제3호	50만원
4. 법 제4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실시사항을 기록·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고한 자	법 제56조의2 제1항제4호	30만원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제5조 관련)

1. 격리수용 방법

가. 접촉격리대상 전염병(제1군 전염병 중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물테러전염병)

- (1) 격리수용 기간동안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에 입원시킬 것
- (2) (1)에 따른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자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격리 할 것
- (3) 격리수용된 자에 대하여 격리수용기간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하도록 할 것
- (4) 격리수용된 자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하고,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실시할 것
- (5) 의료진을 포함한 격리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문자에 대하여 1회용 장갑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며, 손씻기 등 전파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것
- (6)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

나. 호흡기격리대상 전염병(제1군 전염병 중 페스트,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3군전염병·제4군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

- (1) 전염병예방시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제1군전염병 환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1인실에 입원시킬 것. 이 경우 1인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음압(陰壓)시설이 구비되고 공기 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세면대와 화장실이 구비되어야 한다.
- (2) (1)에 따른 음압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격리시설에 입원시킬 것
- (3) 격리수용된 자에 대하여 격리수용기간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하도록 할 것
- (4) 격리수용된 자의 호흡기 분비물은 철저히 관리하여 처리하고, 이에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실시할 것
- (5) 의료진을 포함한 격리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문자에 대하여 1회용 장갑, 마스크, 두건, 1회용 가운, 보호안경 및 소독 가능한 신발덮개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6)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

2. 격리수용 절차 등

가. 격리수용 대상 환자를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전염병예방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격리시설에 격리수용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수용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 격리 수용 대상자의 격리 수용기간은 환자로 밝혀진 시점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 (1) 접촉격리대상 전염병
 - (가)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대변에서 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2회 이상 음성인 때
 - (나)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대변에서 병원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3회 이상 음성인 때
 - (다) 생물테러전염병 :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
- (2) 호흡기격리대상 전염병
 - (가) 페스트 : 치료 개시 후 48시간
 - (나) 제3군전염병 : 치료개시 후 24시간
 - (다) 제4군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 : 당해 전염병의 증상 및 전염력이 소멸된 때

라. 격리시설의 장 및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를 통하여 격리 해제가 가능한 자를 격리 해제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격리 해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격리수용기간동안 적절한 치료를 하였지만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병원체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회복기 보건자로 보건소에 등록하고 이를 관리한다.

바. 회복기 보건자는 수용 시설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할보건소장의 관리 하에 자가에서 격리 치료할 수 있다.

사. 회복기 보건자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관리 하에 지속적인 치료를 하도록 하고,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자는 관리 대상에서 해제하여야 한다.